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케이지에이에셋(주) 보험대리점

2. 제재조치일 : 2026. 6. 22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보험대리점	기관주의 과태료 40만원 부과
보험설계사	업무정지 30일(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) 및 업무정지 90일(손해 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) : 1명 과태료 20만원 부과 : 1명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사항

(1)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

- ☐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·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해서는 아니 됨에도,
 - 케이지에이에셋(주)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0. 1. 8.~2020. 4. 1. 기간 중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乙이 실제 모집한 ㉠손해보험 총 143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(초회보험료 123백만원)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, 보험설계사 乙에게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59.4 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법규 >

1. 舊「보험업법」 제99조 제2항 제1호

(2)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
(자필서명 미이행)

-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,
- 케이지에이에셋(주)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丁은 2021. 5. 26. ㉠보험 1건의 손해보험계약(초회보험료 0.1백만원, 수수료 0.2백만원)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 청약서에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법규 >

1. 「보험업법」 제97조 제1항 제7호